공사이행보증 제도 시행

1. 도입배경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그동안 공사이행보증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설비공사의 분리발주 확대, 보금자리주택의 직할시공제 시행 등 공사이행보증의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9. 6. 15일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데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됨과 아울러 건전한 수주관행을 정착할 수 있도록 저가로 낙찰된 공사에 대하여는 보증인수거부제도를 시행합니다.

2. 공사이행보증의 심사방법

가. 보증심사방법

○ 조합원의 신용등급, 계약내용, 안정성, 지점장 평가 등을 통해 9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심사합니다.(아래 표)

나. 심사등급별 보증수수료 및 담보징구

○ 보증수수료 기본요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합니다.

○ 보증심사결과 심사등급에 따라 6등급 이하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증 수수료를 할증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심사등급	보증수수료 할증	담보징구 범위
1~5등급	면제	면제
6등급	산출수수료의 10%	보증금액의 2%
7등급	산출수수료의 20%	보증금액의 6%
8등급	산출수수료의 30%	보증금액의 10%
9등급	산출수수료의 40%	보증금액의 14%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평점	90점이상	90점미만 85점이상	85점미만 80점이상	80점미만 75점이상	75점미만 70점이상	70점미만 65점이상	65점미만 60점이상	60점미만 55점이상	55점미만

(단위 : 연%)

구 분	신용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단독도급	0.210	0.315	0.455	0.63	0.63	0.665	0.665	0.7	0.7
공동도급	0.15	0.225	0.325	0.45	0.45	0.475	0.475	0.5	0.5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는 단독도급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3. 약정방법 및 담보조건

가. 약정방법 : 개별거래용 채무약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나. 연대보증인

○ 약정인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 대표자 전부

○ 약정인의 임원(감사를 포함함) 또는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 입보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연간 100,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에 한 합니다.

※ 자연인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조합 직원의 입회하에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다. 조합원 입보

○ 대상공사 : 계약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70% 미만인 공사

○ 입보자격 : 당해 공사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조합원 1인 이상 입보(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는 제외합니다.)

4. 보증인수 거부제도 시행

설비건설업계의 건전한 수주관행을 정착하고, 조합의 보증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보증인수 거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이 69%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조합원 연대보증인 등을 입보하더라도 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 합니다.

5. 당부 사항

공사이행보증은 계약보증에 비하여 최소한 4배이상의 보증 부담이 되고, 보증사고시 리스크가 큰 점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초기에는 개별거래용 채무약정, 제3자 및 조합원 입보 등 다소 담보조건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보증사고 추이 등을 감안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할 계획이오니 조합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

저가공사 보증심사 제도 시행

1. 도입배경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저가로 수주한 공사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하여 저가공사에 대하여는 보증수수료를 할증하며, 반복적으로 저가수주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전체 보증에 대한 수수료 할증, 신용등급 한단계 하향 조정, 그리고 업무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를 마련하여 2009. 7. 1일부터 저가공사에 대한 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설비건설업계에서는 조합원들이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저가로 공사를 수주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되는 데 따른 것으로서 업계의 건전한 공사수주 관행

을 유도함으로써 보증손실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서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됩니다.

2. 시행방안

가. 저가판정 기준

○ 저가판정기준은 낙찰자의 낙찰금액을 입찰참여자의 평균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를 저가로 판정합니다.

○ 평균입찰금액 산정시 낙찰자의 낙찰금액과 최고가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낙찰자를 제외하고 최소한 3개사 이상의 입찰금액이 파악되어야 심사합니다.

나. 심사대상 계약금액, 보증종류 및 공사범위

○ 계약금액은 건당 신규보증 기준으로 30억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 공사범위는 종합건설업체가 직접 발주하거나 하도급하는 공사를 조합원이 수주한 공사로 하며, 관급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신고

위 가, 나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가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여자 또는 대한설비건설협회(시 · 도회 포함)가 낙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합니다.

3. 저가판정시 등급, 보증수수료 및 담보징구범위

저가 신고된 공사에 대한 심사결과 저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5등급으로 구분 합니다.

등급별	낙찰률
1등급	90%미만 87%이상
2등급	87%미만 84%이상
3등급	84%미만 81%이상
4등급	81%미만 78%이상
5등급	78%미만

저가로 판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보증수수료를 할증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급별	보증수수료 할증률	담보금액 제공금액 (보증금액대비징구비율)
1등급	20%	–
2등급	50%	
3등급	100%	10%
4등급		20%
5등급		40%

3. 제재사항

○ 입찰참여자가 허위 신고 또는 입찰금액 등 입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신용등급의 한단계 상향을 제한합니다. 다만, 신용평가결과 신용등급이 변경되지 않거나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낙찰자가 입찰 참여자 명단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발급을 제한합니다. 입찰참여자 명단은 낙찰자 또는 신고자에게 문의하여 파악할 수 밖에 없는 바, 저가 신고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신고자도 입찰참여자의 명단을 제

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저가공사로 판정된 조합원에게는 당해 공사에 대한 보증수수료 할증과 담보제공 이외에도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재가 추가됩니다.

- 1회 판정시에는 차기 신용평가 때 1회에 한하여 산출된 신용등급에서 한단계 상향 조정을 제한합니다. 다만, 신용평가결과 등급이 변경되지 않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 2년이내 2회 판정시에는 차기 신용평가 때 1회에 한하여 신용등급 한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판정일부터 1년간 조합에 신청하는 모든 보증수수료에 20%를 할증합니다. 다만, 저가판정된 당해 공사에 대하여는 저가판정 등급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를 할증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년이내 3회이상 판정시에는 판정일로부터 6개월간 업무거래를 제한합니다.

4. 조합원사에 대한 당부사항

○ 최근 경기둔화 등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수주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저가공사의 보증심사 강화는 설비건설업계의 건전한 수주관행을 정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또한 보증심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입찰 참여 조합원사의 입찰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상식

갯벌은 살아있다

갯벌하면 진흙이 쌓인 퇴적물 벌판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지요? 갯벌은 생태계의 또 다른 보물창고입니다. 갯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1미터가 넘는 갯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갯벌생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 수도 엄청납니다. 갯벌 생물들은 일시적으로 갯벌을 방문하는 물고기나 철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돌말류와 여러 종류의 염생식물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산란과 서식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갯벌에서는 조개를 비롯한 많은 먹거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작은 보물섬 바위해안

바위해안은 자갈밭, 큰 돌멩이, 바위, 암반 그리고 바위 절벽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위해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은 모래나 갯벌에서 관찰되는 식물종류와는 매우 다릅니다. 바위해안에는 파래류, 청각류, 모자반이나 톳류, 미역이나 다시마류, 우뭇가사리류 등 뿌리가 없는 해조류들이 많습니다. 수중림을 형성하며 수많은 해양생물들에게 은신처나 서식처, 산란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위해안에는 갈고둥, 대수리와 같은 고둥류를 비롯해, 바위게나 옆새우류 같은 갑각류, 그리고 담치류, 군부류, 갯지렁이류, 불가사리와 성게류, 별벌레류, 납작벌레류 등이 어울려 삽니다.

전자어음의 할인제도 도입

1. 도입배경

○ 조합은 조합원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에 대하여 할인 업무를 하고 있는 바, 전자어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 따르면 2009.11. 9.부터 자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가 어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어음을 발행토록 하고 있어 그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조합은 건설업계의 이러한 변화추이에 부응하여 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09. 8. 17.부터 전자어음 할인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으니 조합원들의 많은 이용이 있길 바랍니다.

2. 융자한도 및 어음할인 대상

○ 조합원별 좌당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되오니 한도에 대하여는 거래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융자종류간 중복이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 어음할인한도 범위내에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어음할인이 가능합니다.

- 조합원이 공사를 실제로 이행하고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은 할인 불가)
- 시공능력평가액이 2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발행한 어음
- 할인일부터 만기일까지 120일 이내인 어음

3. 조합원의 전자어음의 할인 신청 절차

○ 거래은행에 전자어음 이용신청서 제출

- 전자어음을 수취, 배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사용가능

○ 조합 지점이나 영업소에 어음할인 가능 여부에

융자 종류		2009년	2010년	비 고
신용 운영자금	면허 기준좌수 1좌당 한도액	603,000원	548,000원	
	면허 기준좌수 초과 1좌당 한도액	667,000원		
담보운영자금		1,300,000원		
시공자금		1,100,000원		
어음할인		1,100,000원		

대한 문의
- 어음할인한도, 할인대상 어음인지 여부, 제출서류 등에 대한 문의

○ 전자어음의 배서
-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홈페이지 혹은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으로 배서할 어음을 선택한 후 전자어음 배서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피배서인 인적사항 등)하고 공인 인증서로 전자어음에 배서
- 배서수수료(2,000원) 납부

○ 배서가 완료되면 조합에서 최종 심사후 할인어음금 입금

※ 조합원의 건설업체로부터의 전자어음 수취 절차

○ 거래은행에 전자어음 이용신청서 제출
-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전자어음의 수취 및 배서 가능

○ 발행인이 조합원을 수취인으로 하여 전자어음 발행

○ 조합원은 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내역을 조회
- 조회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수령 거부가 가능하며, 수령을 거부하면 어음 발행이 무효처리됨

〈전자어음의 발행 및 할인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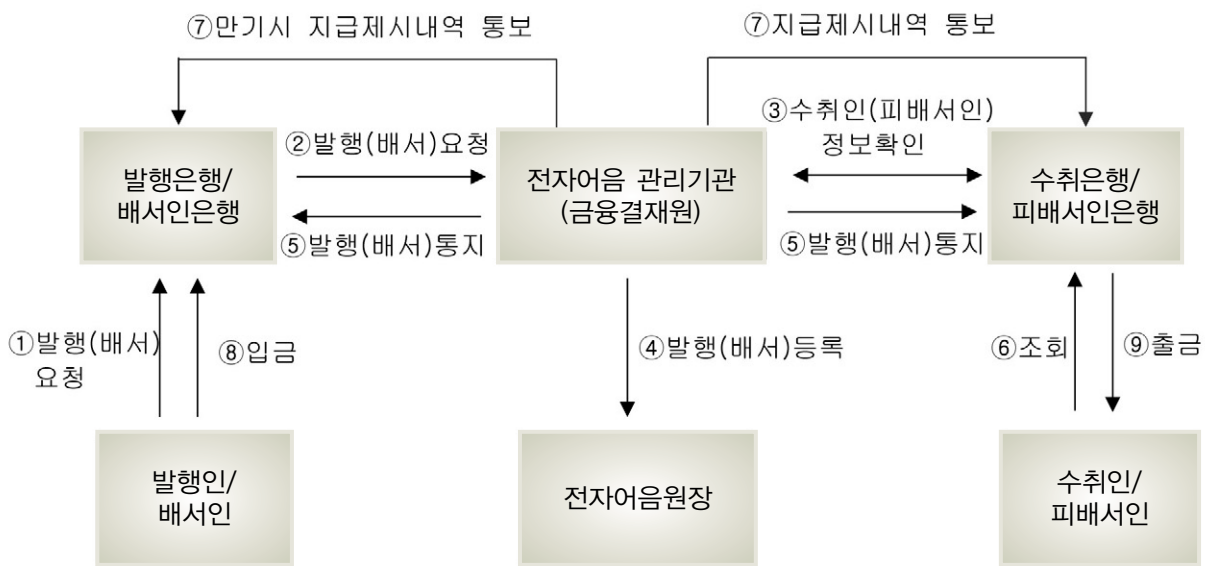

※어음할인시에는 조합원은 배서인, 조합은 피배서인이 됩니다.

보증한도 이용방법 변경 안내

2009. 5. 18부터 지급 · 기타보증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보증의 여유한도를 일반보증한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된 내용은 기존 일반보증 약정금액의 경우 종전에는 일반보증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만 약정하였으나, 개선된 약정방법으로는 지급 · 기타보증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보증에 합산되어 약정되도록 하였고, 또한 융자금을 이용(전액 또는 일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환비율(20% 상환단위로 1배)에 따라 최고 5배 범위내에서 일반보증 및 지급 · 기타보증에 가산되어 약정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께서는 지급 · 기타보증의 미이용 한도를 일반보증 한도로 혼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약정된 일반보증한도는 융자미이용 및 지급 · 기타보증의 보증잔액에 따라 일반보증한도에서 차감되고, 신용운영자금을 전액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에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일반보증의 배수가 적용되오니 보증한도 관리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지점(영업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지급 · 기타보증의 약정금액을 일반보증의 약정금액에 합산하여 한도계산이 되기 때문에 일반보증의 여유한도 계산시 지급 · 기타보증의 잔액을 감안하여 계산해야 하고, 지급 · 기타보증의 여유한도 계산시도 일반보증의 잔액과 융자금액을 감안하여 여유한도를 계산하여야 함.

사 례

1. AAA등급의 융자를 전부 상환 또는 미이용하는 경우(가산배수 5배 약정)

○ 일반보증의 약정금액 : 출자지분액의 18배(일반보증배수 9배+일반가산배수 3.46배+지급기타보증배수 4배+지급가산배수 1.54배)

○ 지급 · 기타보증의 약정금액 : 출자지분액의 5.54배(지급기타보증배수 4배+가산배수 1.54배) → 융자를 전부 상환하였기 때문에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AAA등급의 융자를 전부 이용하는 경우

○ 일반보증의 약정금액 : 출자지분액의 13배(일반보증배수 9배+지급기타보증배수 4배)

○ 지급 · 기타보증의 약정금액 : 출자지분액의 4배 → 융자를 전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 · 기타보증의 약정금액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유한도는 '0원' 임.

3. AAA등급의 융자를 일부 이용하는 경우(20% 상환 – 1배가산)

○ 일반보증의 약정금액 : 출자지분액의 14배(일반보증배수 9배+일반가산배수 0.69배+지급기타보증배수 4배+지급가산배수 0.31배)

○ 지급 · 기타보증의 약정금액 : 출자지분액의 4.31배(지급기타보증배수 4배+가산배수 0.31배) → 융자를 일부 상환하였기 때문에 지급 · 기타보증의 약정금액중 일부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안내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13조제1항1의2의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신규등록 및 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매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ㅇ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동 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해당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출자할 금액이 정해지며, 동 금액을 예치함과 동시에 확인서를 발급함.

《발급절차》

신용평가 신청 — 지점 · 영업소에 신청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신용등급별 출자금 예치 — '08년말기준 1좌당 : 929,374원

⇩ – 3일 소요

신용등급별 출자금 예치 — '08년말기준 1좌당 : 929,374원

⇩ – C등급 : 54좌, CC등급 : 48좌, CCC등급 : 44좌
ex) CC등급 예치시 : 48×929,374 = 44,609,952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08년말기준 1좌당 : 929,374원

⇩ – 발급받은 확인서는 건설업등록서류에 첨부

◈ 건설업 등록 및 조합가입 절차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 및 신청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본금 표시분 포함)
2. 자본금 관계서류(조합출자금 포함 2억원이상)
   – 재무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재무제표증명원(세무대리인 확인)
   – 보증가능금액확인서(설비조합 발행분)
3. 기술자보유현황표(2인이상)
   – 기술자자격증사본(경력수첩 사본 포함)
   – 상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갑근세, 기술인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중 1가지 택일)
4. 기타 사무실 확보
   – 사무실 전용면적 20㎡이상

등록관청(시 · 군 · 구청) 검토 및 실사

⇩ – 처리기간 약 20일 소요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 국민주택채권(법정자본금의 2/1000)
– 면허세(18,000원)

출자전환 및 조합원 가입 — 기제출 서류 생략

⇩ – 건설업 등록증 사본(원본지참)
– 법인의 경우 정관사본

◈ 조합원의 각종 혜택

○ 연대보증인이나 담보제공 없이 26배까지 보증이용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등 조합원이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
○ 일반 보증사 보다 저렴한 보증수수료
일반보증사의 약 50% 정도가 저렴하게 보증이용
(특히, 출자금 범위내 이용할 경우 1건당 3,000원)
○ 저렴한 이자율(2%)로 융자이용
출자금예치후 2년 경과시 출자금의 60%까지 융자
○ 조합의 각종 수익금은 조합원에게 배당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지분액에 반영

◈ 조합 업무거래 편의제공

○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조합원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업무를 신속 · 편리하게 이용
– 조합과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체결, 보증서 발급, 융자신청 등 각종업무
– 조달청 등 보증채권자에게 G2B 및 B2B전자보증을 조합의 전산망을 통하여 전자전송 제

◈ 기타 서비스 제공

○ 조합원사의 임 ·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기술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
– 교육비 조합지원
– 기술자 자격유지를 위한 법정교육

◈ 근로자재해공제 보험증권 취급

○ 조합원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 장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와 업무제휴하여 보험사 취급비용의 약 30% 저렴하게 조합에서 보험증권 발급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지점 또는 영업소에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www.seolbi.com)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사와 유명 인물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는 지금은 내륙에 있지만 예전에는 이탈리아 나폴리 만 부근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의 남동쪽에 있었다.
농업, 상업의 중심지였고, 고대도시로는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인구는 2만~5만 명이었다. 그리고 베수비오 화산이 큰 분화를 일으켰을 때 2천여 명이 사망했다.
분화가 멎은 뒤 15세기까지 폼페이의 존재는 잊혀졌다. 16세기 말부터 소규모 발굴이 꾸준히 계속되어 옛시가의 절반 정도가 발굴되었다. 전성기에 갑자기 멸망했으므로 당시 로마 도시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었다. 상당히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도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폼페이의 벽화에서 헬레니즘 회화를 엿볼 수 있다.
벽화를 포함한 초기의 발굴품은 대부분 나폴리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말랑말랑한 절대상식」 中에서

보증(융자)채무 약정

가. 약정이란

조합원이 조합에 보증이나 융자를 신청함에 앞서 약정인과 연대보증인(법인의 대표자 개인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이 조합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확약하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나. 약정의 종류

(1) 한도거래용보증(융자)채무약정

조합원이 일정기간에 걸쳐 일정금액을 한도로 조합으로부터 보증 및 융자업무를 계속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2) 개별거래용보증(융자)채무약정

한도거래용채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매 거래시마다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3) 전자약정

인터넷을 통해 한도(개별)거래용보증(융자)채무약정서에 범용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여 체결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다. 약정체결 시 구비서류

(1) 지점(영업소) 방문 시

(가) 약정인

법 인	개 인
1. 약정서(조합소정서식)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이사회차입결의 및 감사 승인서 또는 사원차입결의서 사본, 이사회회의록사본, 사원회의록 사본(융자일 경우)	1. 약정서 (조합소정서식) 2. 개인인감증명서

(나) 연대보증인

구 분	약정인 대표자	최다주식보유자
개인	개인인감 증명서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 상황 명세서 사본 2. 개인인감증명서
법인	-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 황 명세서 사본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4.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공사이행보증의 연대보증인은 별도 적용(공사이행보증 참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2) 전자약정시

(가) 약정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는 범용공인인증서로 갈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지점(영업소)에서 출력
- 이사회차입결의 및 감사승인서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원회의록 사본(모사전송 가능) [융자일 경우]

(나) 연대보증인

구 분	약정인 대표자	최다주식보유자
개인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용범용공인인증서로 갈음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모사전송가능) 2.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로 갈음
법인	–	1.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사본(모사전송가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지점(영업소)에서 출력 3.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 갈음 4.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는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 갈음

(3) 약정체결 시 유의사항

(가) 전자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법인 및 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나)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이 금융기관의 채무불이행 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약정체결이 불가합니다.

(다) 약정체결 후 다음의 사유 발생시 약정을 갱신하여야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약정인의 출자금액 감소
- 보증(융자)한도액의 감소
- 신용평가 등급의 하락
- 연대보증인 입보자격의 상실
- 법인의 대표자 변경

(라) 보증거래약정과 융자거래약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중복 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마) 조합과의 보증(융자)업무거래에 사용할 인감(1개에 한함)은 신고하여야 하며, 약정서에는 반드시 원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라. 연대보증 조건

약정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자격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최다주식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자격을 동시에 입보)가 연대보증 하여야 합니다.

약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반드시 조합직원 입회하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1. 조합 가입(건설업 양수업체 포함) 후 처음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2.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3. 대표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하여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4. 각자 대표자 중 연대보증하는 대표자를 변경하여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5. 공사이행보증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전자약정체결후 조합창구 업무이용을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대표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항시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며, 1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의 조정 또는 신용평가등급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보증잔액이 보증별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을 하지 아니합니다.

무한지식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방귀에 세금을 매기다

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교육세, 주세 관세 등등 세금 항목은 다양하기도 한데, 옛날 영국에는 '창문세'라는 희한한 세금이 있었다. 17세기 영국의 왕 윌리엄 3세는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로 집에 창문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고 그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고 한다. 창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집이 크다는 뜻이고, 집이 크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낼 여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시 영국에서는 집은 커도 창문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세금을 내느니 햇빛을 포기할 만큼 세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안 그래도 안개와 흐린 날이 많은 영국에서 창문마저 없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다.

지금 생각하면 창문세는 좀 어이없는 세금이지만, 얼마 전 뉴질랜드에서도 색다른 세금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일이 있었다. 정부가 소에게 이른바 '방귀세를 물리는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를 키우는 목축업자들은 당연히 크게 반발했다. 이제는 소들이 방귀도 마음대로 못 뀌냐고 말이다. 황당한 뉴스 같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을 펴낸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문명비판가인 제레미 리프킨에 따르면, 현재 연간 약 5억 통의 메탄가스가 대기 중에 방출되는데 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10억 마리의 소들이 배출하는 것이 무려 6,000만 톤에 이른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의 1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소들도 자동차 못지않은 메탄가스의 주범이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중에 메탄은 전체 온실가스량의 15~20%를 차지한다.

뉴질랜드의 방귀세는 결국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소를 많이 키우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호주 정부당국의 눈을 사로잡은 동물이 있었으니 바로 캥거루다. 갱거루 역시 소처럼 풀을 먹고 살지만 캥거루의 방귀에는 메탄가스가 없다. 풀을 먹는 가축들이 메탄가스 방귀를 내뿜는 것은 위 속에 있는 박테리아의 분해과정 때문이다. 그런데 캥거루가 메탄가스 방귀를 뀌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분해 과정에 비밀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본 것이다.

호주 과학자들은 캥거루의 위 속에는 가축들의 위에 사는 박테리아와는 또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할 거라고 추정하고, 캥거루의 위에서 40종류의 박테리아를 채집해서 각각의 기능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 박테리아를 주입해서 메탄가스 없는 방귀를 선물할 것이라고 한다. 환경문제라면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에게 소와 캥거루의 방귀까지 매달리는 과학자들의 노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